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4.21 (화) 10:30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이영복 의원 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제안 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, 시행되고 있는 ‘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’의 일부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수여되는 상과 인증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현실화(안 제4조, 안 제8조, 안 제10조)
- 나. 협의회 구성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(안 제15조)

다.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문의 자구수정(안 제16조, 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조례로서, 시행상 제기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과 운영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